

위법계약 해지 요구서

유미캐피탈대부 (주) 귀중

신청인(채무자) 인적사항(자필로 기재)

구 분	성명	생년월일	주소	연락처
내 용				

계약해지 사유

계약해지 대상 상품명	
계약체결일	
계약해지 사유	<input type="checkbox"/> 적합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7③) <input type="checkbox"/> 적정성 원칙 위반 (금소법 §18②) <input type="checkbox"/> 설명의무 위반 (금소법 §19①, ③) <input type="checkbox"/> 불공정영업행위 (금소법 §20①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당권유금지 위반 (금소법 §21)

계약해지 사유의 근거

증빙자료	(예 : 별도첨부 ①, ②, ③)
참고자료	(예 : 별도첨부 ①, ②, ③)

안내 사항

본 신청서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에 따라 위법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입니다.
당사는 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7조 제2항에 따라 “정당한 사유”가 있는 경우에 고객의 해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성명 (서명 또는 날인)